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10302 손해배상(기)
원 고 정 0 0
인천 연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순
피 고 1. 교 0 0 0 0 0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신 0 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2. 심 0 0
인천 부평구
변 론 종 결 2008. 2. 13.
판 결 선 고 2008. 2.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는 2008. 2. 5.부터, 피고 심 0 0은 2008. 2. 14.부터 각 2008. 2. 2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는 금 48,859,333원 및 이에 대한 2008. 2. 5.부터 2008.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심 0 0은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 사이의 2002. 1. 8.자 대출금 5,000,000원, 이율 연 11.95%, 상환기일 2006. 5. 2.로 한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심 0 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심 0 0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다항, 제2항 및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28,859,333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9.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

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중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에 대한 8,000만원의 보험금 청구와 800만원의 생존급여금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심 0 0의 불법행위책임과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9.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심 0 0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1996. 12. 10.경부터 2003.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현황 각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별지 보험계약현황 5, 6번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심 0 0이 원고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직접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체결 당일 피고 심 0 0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이후 2003. 11.경까지 매월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2) 피고 심 0 0은 2003. 8. 5.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의 우편물 수령처를 원고의 자택에서 피고 심 0 0이 근무하고 있던 인천 0 0 영업소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7.경 피고 회사가 발송한 '보험료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안내문'을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조 0 0이 2003. 12. 1. 뇌졸중으로 쓰러져 같은 달 10.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 심 0 0에게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 심 0 0은 원고에게 2003. 6.경부터 피고 회사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실토하고,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이 해약처리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4) 피고 심 0 0은 원고에게 그 동안 원고가 불입한 보험료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을 부활시키겠다고 하여 2003. 12. 2. 피고 회사에 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은 부활되었다.

다. 피고 심 0 0의 생존보험금 사기

피고 심 0 0은 2002. 12. 26. 원고로부터 보험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 심 0 0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을 말하면서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의 각 생존급여금 20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고 회사로부터 4,093,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 심 0 0의 약관대출 사기

(1) 피고 심 0 0은 2000. 11. 20.부터 2003. 12. 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약관대출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 심 0 0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을 말하면서 피고 회사에 약관대출

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약관대출현황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2,8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심 0 0은 2002. 1. 8. 원고로부터 약관대출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 심 0 0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을 말하면서 피고 회사에 약관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고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7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상 일반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이 보험사고 당시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보험청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일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정해진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였다면 그 보험모집인이 납입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 유무만 문제될 뿐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심 0 0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심 0 0이 원고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직접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체결 당일 피고 심 0 0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이후 2003. 11.경까지 매월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 하더라도 2003. 12. 2.경 피고 심 0 0로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이 실효되어서 추후 조 0 0이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003. 12. 10.경 조 0 0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보험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 회사 스스로 보험사고 당시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때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피고 심 0 0이 원고에게 해당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일인 2003. 12. 10.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살피건대, 2003. 12. 10. 조 0 0이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

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바, 보험사고 당시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 처리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피고 심 0 0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져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보험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

(다)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는 경우 피고 심 0 0의 보험료 횡령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잘못된 안내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심 0 0의 사용자로서, 피고 심 0 0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인 8,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심 0 0이 원고에게 해당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만연히 피고 심 0 0의 말만 믿은 채 피고 회사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살피건대, 피고 심 0 0의 보험료 횡령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잘못된 안 내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심 0 0이 원고에게 해당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피고 심 0 0의 말만 믿

은 채 피고 회사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무에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 심 0 0에 대한 판단

피고 심 0 0은 위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심 0 0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기하여 각자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사망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008. 1. 29.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8. 2. 5.부터, 피고 심 0 0은 같은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8. 2. 14.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생존급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심 0 0은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원고로부터 보험금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생존급여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직원을 속여 2002. 12. 26. 피고 회사로부터 4,093,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피고 심 0 0에게 생존급여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원

고는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상 2003년도 생존급여금 합계 400만원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상 2002년도 및 2003년도 생존급여금 합계 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심 0 0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로 지급신청을 하면 피고 회사에 등록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생존급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생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심 0 0이 2002. 12. 26. 원고로부터 보험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 심 0 0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을 말하면서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의 각 생존급여금 20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고 회사로부터 4,093,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 보장내용으로 생존급여금은 피보험자가 가입 1년 후부터 만기 1년 전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의 계약해당일인 2003. 7. 9., 같은 해 11. 26. 각 2003년도 생존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에 기한 2002년, 2003년도 생존급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5, 6번 보험계약에 기한 2002년, 2003년도 생존급여금 합계 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8. 1. 29.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8. 2.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해약환급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보험계약현황에 기재된 각 보험계약 중 4번 생생여성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보험은 모두 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약처리되었거나 실효된 상태인데, 피고 회사는 별지 약관대출현황 각 기재 약관대출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과 위 각 약관대출채무를 상계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위 각 약관대출은 피고 심 0 0이 원고의 위임 없이 피고 회사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해약환급금 현황 각 기재 해약환급금(배당금, 가산금 포함) 합계 40,859,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심 0 0은 원고의 기존 보험계약에서 신용대출과 약관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 심 0 0의 주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받는 이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원고의 동의 내지 허락 하에 원고를 대리하여 약관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각 약관대출채무에 기한 상계는 적법하고, 위 해약환급금 중 4,512,977원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심 0 0이 2000. 11. 20.부터 2003. 12. 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약관대출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 심 0 0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을 말하면서 피고 회사에 약관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약관대출현황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2,8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1. 5.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 배당금, 가산금은 별지 해약환급금현황 각 기재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약관대출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관대출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 중 4,512,977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해약환급금현황 각 기재 해약환급금(배당금, 가산금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해약환급금현황 각 기재 해약환급금(배당금, 가산금 포함) 합계 40,859,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8. 1. 29.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8. 2.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라. 대출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심 0 0이 2002. 1. 8. 원고로부터 약관대출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 심 0 0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을 말하면서 피고 회사에 약관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고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02. 1. 8.자 약관대출계약은 무효이고, 위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마. 피고 심 0 0에 대한 차용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심 0 0은 차용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심 0 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교 0 0 0 0 0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_____

 판사 윤정인 _____

관사 이동기 _____

보 험 계 약 현 황

순 번	계약자	피보 험자	계약일	상품명	가입증서번호	월보험료 (원)
1	정 0 0	정 0 0	1996. 12. 1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196120372912	164,900
2	정 0 0	서 0 0	1997. 5. 23.	마스터안전	197050373637	34,050
3	정 0 0	서 0 0	1997. 10. 29.	교통안전	197100372163	15,200
4	정 0 0	정 0 0	1999. 6. 28.	생생여성건강	199063483512	69,500
5	정 0 0	조 0 0	1999. 7. 9.	우대저축	199073658995	375,400
6	정 0 0	조 0 0	1999. 11. 26.	우대저축	199111451534	370,600
7	정 0 0	서 0 0	2000. 7. 21.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00073889005	86,940
8	정 0 0	서 0 0	2000. 8. 17.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00084065715	100,900
9	정 0 0	서 0 0	2002. 8. 2.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202082003144	278,500
10	정 0 0	서 0 0	2003. 2. 14.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203022012491	201,600

끝.

약 관 대 출 현 황

순번	일자	대출금액(원)	보험
1	2000. 11. 20.	2,90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	"	300,000	마스터안전보험
3	"	300,000	생생여성건강보험
4	"	2,100,000	우대저축보험
5	"	2,400,000	우대저축보험
6	2001. 8. 31.	1,40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7	"	640,000	우대저축보험
8	"	2,700,000	우대저축보험
9	2001. 9. 1.	280,000	마스터안전보험
10	"	360,000	교통안전보험
11	"	490,000	생생여성건강보험
12	"	1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13	2002. 12. 26.	2,83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14	"	370,000	마스터안전보험
15	"	160,000	교통안전보험
16	"	690,000	생생여성건강보험
17	"	2,380,000	우대저축보험
18	"	3,990,000	우대저축보험
19	"	10,000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20	"	46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1	2003. 4. 2.	59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2	2003. 4. 25.	40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3	"	260,000	생생여성건강보험
24	"	1,100,000	우대저축보험
25	"	1,130,000	우대저축보험
26	2003. 12. 2.	400,000	마스터안전보험
27	"	60,000	교통안전보험
28	"	540,000	생생여성건강보험
29	"	1,260,000	우대저축보험
30	"	1,170,000	우대저축보험
31	"	130,000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32	"	1,070,000	21세기 슈퍼골드연금
		32,880,000	

끝.

해 약 환 금 금 현 황

순번	상품명	증권번호	지급금(원)			
			기본금 (해약환급금)	배당금	가산금	소계
1	21세기 슈퍼골드연금	196120372912	13,371,455	265,557	1,400,101	15,037,113
2	교통안전	197100372163	631,596			631,596
3	우대저축	199073658995	9,789,037		81,506	9,870,543
4	우대저축	199111451534	8,508,317		16,301	8,524,618
5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00084065715	17,575	5,117	2,734	25,426
6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202082003144	15,400		542	15,942
7	마스터안전	197050373637	2,119,872			
8	21세기 슈퍼골드연금	200073889005	4,422,715			
9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203022012491	211,508			
			39,087,475	270,674	1,501,184	40,859,333

끝.